

부속서 2-나

전자제품

제 1 조

일반규정

1. 양 당사자는, 세계무역기구협정, 특히,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상의 양 당사자의 의무를 상기하고, 각 당사자의 성장, 고용 및 무역에서 전자제품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다음의 공유된 목적과 원칙을 확인한다.

가. 양자 무역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점진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철폐하는 것

나. 개방성, 비차별성, 비례성 및 투명성 원칙에 근거한 경쟁적인 시장조건을 수립하는 것

다. 국내 규정을 기존 국제표준에 점진적으로 정합시키는 것

라. 중복적이고 불필요하게 부담이 되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철폐를 통하여 “단일시험”과, 실행 가능한 경우, 공급자의 적합성 선언을 증진하는 것

마. 제조물 책임 및 시장 감시와 관련된 규제와 법의 적절한 집행 메커니즘을 이행하는 것, 그리고

바. 공중보건의 보호 및 제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뿐 아니라 상호 유익한 지속적 무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을 제고하는 것

2. 이 부속서는, 부록 2-나-1에서 정의된 전기 및 전자 기기, 전문가용 전기기술기기, 가정용 전기용품 및 소비자 전자제품(이하 “적용대상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안전과 전자파적합성(이하 “전자파적합성”이라 한다)에 대하여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도입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모든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적용된다.

제 2 조 국제 표준 및 표준제정기관

1. 양 당사자는, 국제표준화기구(이하 “국제표준화기구”라 한다),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이하 “국제전기기술위원회”라 한다) 및 국제통신연합(이하 “국제통신연합”이라 한다)이 적용대상 제품의 전자파적합성 및 안전에 대한 관련 국제표준제정기관임을 인정한다.¹⁾

2. 국제표준화기구, 국제전기기술위원회 및 국제통신연합이 제정한 관련 국제표준이 존재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모든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기초로서 이들 국제표준 또는 그 관련 부분을 사용한다.²⁾

3. 양 당사자는 그들의 표준제정기관이 국제표준화기구, 국제전기기술위원회 및 국제통신연합에서 국제표준의 개발에 참여하고 공통된 접근방식을 수립하기 위하여 협의할 것을 약속하도록 보장한다.

제 3 조 적합성 평가절차

당사자가 적용대상 제품의 전자파적합성 또는 안전에 관한 기술규정에 대한 적합성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의 규칙이 적용된다.³⁾

가. 적합성 평가절차가 다른 쪽 당사자와의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
- 1) 양 당사자는 이 조를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된다고 판단하는 모든 새로운 국제표준제정기관에 대하여 무역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향후 합의할 수 있다.
 - 2) 그러한 국제표준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한쪽 당사자가 국제표준의 그것과 다른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를 채택한 경우, 그 당사자는 자신의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를 안전과 그 밖의 공익 요건에 관한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도로 제한하고, 적절한 경우, 제4장(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따라 디자인이나 외형적 특성보다는 성능에 관한 제품 요건에 근거하도록 한다.
 - 3) 어느 한 쪽 당사자는 현재 적합성 보증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향후 적합성 보증을 요구할 권리를 유보하되, 이 경우에도 그 당사자는 이 부속서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초래할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효과가 발생되도록 준비, 채택 또는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제4조에 규정된 경과조치를 포함하여 이 부속서상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자는 적용대상 제품의 전자파적합성 또는 안전에 관한 기술규정에 대한 적합성 보증으로서 다음의 절차 중 하나 이상을 근거로 제품을 자신의 시장에서 수용한다.⁴⁾

- 1) 어떠한 적합성 평가기관의 개입이나 인정된 시험소에 의한 제품의 시험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공급자의 적합성 선언
- 2) 이 협정의 발효 시 또는 그 이후의 통보에서 다른 쪽 당사자에 의하여 통보된 그 당사자의 영역 내 모든 시험소의 시험 성적서에 근거한 공급자의 적합성 선언. 통보하는 당사자는, 수입 당사자에 의한 사전 승인이나 검증 없이, 그 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관련 시험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⁵⁾ 모든 시험소를 통보하는 것에 대하여 단독으로 책임을 진다. 수입 당사자는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 공급자가 적합성 선언서를 제출할 것과 그 선언서에 시험 성적서를 발행한 시험소의 이름과 시험 성적서의 발행일이 포함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수입 당사자는 주요 부품목록을 포함하여 제품에 적용 가능한 요건에 대한 적합성을 증명하는 시험 성적서의 사본과 제품의 일반적 설명서도 요구할 수 있다. 또는,
 - 3) 다음이 발행한 시험 성적서에 근거한 공급자의 적합성 선언
 - 가) 수입 당사자가 지정한 하나 이상의 적합성 평가기관과 시험 성적서의 상호 수용을 위한 자발적 약정을 체결한 다른 쪽 당사자의 모든 시험소 또는
 - 나) IECCE CB Scheme의 규칙 및 절차와 그에 따른 양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유효한 CB 시험 인증서가 수반된, IECCE CB Scheme 하에 있는 다른 쪽 당사자의 CB 시험소

4) 이 호에 따라 제품을 출시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은 그러한 제품을 출시하는 데 요구되는 모든 강제적 표시를 부착하는 것에 대한 허용을 포함한다.

5) 통보하는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그 당사자에서 자격이 있거나, 인정기관에 의하여 인정(예를 들어 ISO/IEC 17025 하에서)을 받았거나, 통보하는 당사자에서 적합성 평가를 위한 사후 시장감시의 자격이 있는 특정 시험소는 이 부속서에서 상정하고 있는 그 임무에 대하여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수입 당사자는 제품이 자신의 시장에 출시되기 전 검토를 위하여 중요한 부품 목록을 포함하여 제품에 적용 가능한 요건에 대한 적합성을 증명하는 시험 성적서의 사본과 제품의 일반적 설명서를 포함한 적합성 선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호의 절차 중 선택은 부록 2-나-2에 규정된 제한을 조건으로 각 당사자가 한다.

다. 양 당사자는 적합성 선언서를 발급, 변경 또는 철회하는 데 공급자가 단독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수용한다. 양 당사자는 적합성 선언서에 날짜가 기입되고, 적합성 선언서에 공급자 또는 공급자가 권한을 부여한 당사자의 영역 내의 대리인, 그 선언에 서명하도록 제조업자 또는 그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인, 그 선언의 적용대상인 제품, 그리고 적합성 선언에 적용된 기술규정이 적시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공급자의 적합성 선언이 한 회분 제품에 대한 것일 때, 그 한 회분의 각 품목에 적용된다. 시험이 수행될 때, 시험소의 선택은 공급자가 한다. 그리고

라. 이 조에 규정된 것 외에 당사자는 자신의 기술규정을 준수하는 제품의 출시를 방해하거나 달리 지연시킬 수 있는 어떠한 유형의 제품 등록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당사자가 나호3)목에 맞게 공급자의 선언을 검토하는 한, 그 검토는 시험이 그 당사자의 관련 기술규정에 따라 수행되었다는 것과 그 서류에 포함된 정보가 완전하다는 것을 제출된 서류에 근거하여 검증하는 것에만 한정된다. 그러한 모든 검토는 그 당사자 시장에서의 제품 출시에 과도한 지체를 야기해서는 아니 되고, 그 제품이 그 당사자의 기술규정을 준수하고 제출된 서류가 완전하다면 그 선언은 예외 없이 수용된다. 선언이 거부된 경우, 그 당사자는 거부의 근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이를 공급자가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 결정을 공급자에게 즉시 전달한다.

제 4 조 경과조치

1.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발효로부터 3년 이내에 이 부속서 제3조나호를 준수하는 한편, 유럽연합은 이 협정의 발효 시에 그 호를 준수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경과기간 동안, 대한민국이 이 부속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하여, 제3자 시험을 포함하여, 적용대상 제품의 전자파적 합성 또는 안전에 관한 기술규정에 대한 강제인증을 이 협정의 발효 시에 적용하는 한, 대한민국은 그러한 제품의 출시를 수용하기 위하여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⁶⁾

가. 유럽연합의 법령에 따라 “통보기관”으로 지정된 유럽연합 내의 적합성 평가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유럽연합은, 대한민국의 사전 승인이나 검증 없이, 그 영역 내에서 적합성 평가기관을 선택하는데 있어 단독으로 책임을 지며, 이 협정의 발효 시에 관련 기관의 목록과 그 이후 모든 변경을 대한민국에 통보한다. 또는

나. 대한민국의 절차에 따라 지정된 적합성 평가기관이 발행한 그 기술규정에 대한 인증서. 대한민국은 다음이 발행한 시험 성적서에 근거한 그러한 인증서를 수용한다.

1) 대한민국이 지정한 하나 이상의 적합성 평가기관과 시험 성적서의 상호 수용을 위한 자발적 약정을 체결한 유럽연합 내의 모든 시험소 또는

2) IECEE CB Scheme의 규칙 및 절차와 그에 따른 유럽연합 및 대한민국의 약속에 따라, 유효한 CB 시험 인증서가 수반된, IECEE CB Scheme 하의 유럽연합 CB 시험소

이 호의 절차 중 선택은 부록 2-나-2에 규정된 제한을 조건으

6) 이 조에 따라 제품을 출시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은 그 제품을 출시하는 데 요구되는 모든 강제적 표시를 부착하는 것에 대한 허용을 포함한다.

로 대한민국이 한다.

3. 부록 2-나-3에 기재된 제품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제1항에 규정된 경과기간의 만료 후 이 부속서 제4조제2항나호에 따른 인증서에 근거하여 적용대상 제품의 안전에 관한 자신의 기술규정에 대한 적합성 보증을 계속 요구할 수 있다. 부록 2-나-3에 기재된 각 제품에 대하여, 이 부속서 제3조나호에 따라 적용대상 제품의 안전에 관한 자신의 기술규정에 대한 적합성 보증을 수용하는 것이 인간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지 여부가 제1항에 규정된 경과기간 말까지 검토될 것이다. 그러한 위험 평가는 안전사고에 대한 소비자 보고와 제품검사의 부적합률과 같은 이용 가능한 과학적이고 기술적 정보에 근거하여, 출시된 그러한 제품에 대하여 수행될 것이다. 제품이 의도된 최종 용도로, 그리고 합리적이고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여, 사용되었는지도 고려될 것이다. 위험 평가의 결과가 해당 제품에 대하여 이 부속서 제3조나호를 준수하는 것이 인간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또는 수립된 사후 시장감시 체계가 그러한 위험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없는 경우, 이 부속서 제4조제2항나호에 규정된 적합성 보증이 유지될 수 있다. 양 당사자는, 경과기간의 종료 후 3년마다 부록 2-나-3에 기재된 제품을 더욱 축소하기 위하여 위험 평가를 상품무역 위원회에서 검토한다.

제 5 조

통합 및 요건의 점진적 축소

1. 양 당사자는 적용대상 제품에 대해 그 제품의 전자파적합성 또는 안전을 포함하는 적합성 평가절차, 또는 시험 성적서를 승인하거나 검토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에 관하여 이 부속서에 규정된 것보다 더 무역 제한적이거나 시장에 대한 접근을 지연하는 효과를 달리 가지는 어떠한 요건을 유지하거나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이 협정의 발효 후 5년 이내에 대한민국은 이 부속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일부 제품의 출시를 위하여 이 부속서 제3조나호1)목에 따른 공급자 적합성 선언을 도입한다. 공급자 적합성 선언을 도입한 후 5년마다, 양 당사자는 이 부속서 제3조나호1)목에 따른 공급자 적합성 선언의 도입을 확대하는 것과 그러한 시스템이 적절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시장감시를 발전시키는 것을 통해, 제3자 강제시험을 포함하여 기술적이고 행정적인 요건을 점진적으로 철폐해 나갈 가능성을 검토한다.

제 6 조 예외 및 긴급조치

1. 이 부속서의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쪽 당사자는 이 부속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특정 제품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에 따라 적용대상 제품의 전자파적합성 또는 안전에 대한 제3자 강제시험 또는 인증에 대한 요건을 도입하거나, 시험 성적서를 승인하거나 검토하는 행정적 절차를 도입할 수 있다.

가. 그러한 요건이나 절차의 도입을 정당화하는 인간의 건강과 안전의 보호와 관련된 긴급하고 결정적인 이유가 존재할 것

나. 그러한 요건이나 절차의 도입 이유가 해당 제품의 성능에 관한 실증된 기술적 또는 과학적 정보에 의해 지지될 것

다. 그러한 요건이나 절차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초래할 위험을 고려하여, 그 당사자의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지 아니할 것, 그리고

라. 그 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 시에 그러한 요건이나 절차를 도입할 필요를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을 것

요건이나 절차를 도입하기 전에, 그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협의 후에 그러한 요건이나 절차를 고안함에 있어 가능한 최대한도에서 다른 쪽 당사자의 의견을 고려한다. 도입된 모든 요건은 가능한 최대한도에서 이 부속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일단 채택되면, 도입된 모든 요건이나 절

차는 채택된 날부터 3년마다 검토되고 이를 도입한 이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폐지된다.

2. 특히 제품에 적용 가능한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어느 적용대상 제품이 인간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초래한다고 당사자가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당사자는 그 제품을 자신의 시장에서 회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러한 일시적인 긴급조치는, 그러한 조치가 취해진 이유에 대한 객관적이고 논증된 설명과 함께 그러한 조치의 필요성이 다음 어느 사항에 기인하는지를 적시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된다.

- 가. 적용 가능한 표준 또는 기술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것
- 나. 표준 또는 기술규정을 부정확하게 적용한 것, 또는
- 다. 표준 또는 기술규정 그 자체의 결함

제 7 조 이행 및 협력

1. 양 당사자는 무선주파수 기기와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규제 문제에 관하여 공통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긴밀히 협력하고, 이 부속서의 이행과 관련한 다른 쪽 당사자의 모든 요청을 고려한다.

2. 양 당사자는 그들 간 시험 성적서의 상호 수용을 위한 자발적인 약정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3. 대한민국이 이 부속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하여 적합성 보증으로서 이 부속서 제3조나호3)목 및 제4조제2항나호에 규정된 절차를 요구할 때에는 언제나, 대한민국은 그 제품에 대한 자신의 기술규정이 관련 국제전기기술위원회 표준과 실질적으로 다른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제품에 대하여 자신의 인증기관이 유럽연합 내의 시험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거나 IECEE CB Scheme 하의 국가인증기관임을 보장한다. 이 항은 이 부속서 제4

조제1항에 규정된 경과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적용된다.

4. 적용대상 제품의 전자파적합성 또는 안전에 대한 기존 기술규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기술규정을 개발할 때에,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 가능한 추가적 정보나 다른 쪽 당사자가 제시한 의견에 대한 서면답변을 제공하며, 적절한 경우 다른 쪽 당사자의 견해를 고려한다.

5. 양 당사자는 이 부속서의 이행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 신속히 협의할 것과 적절한 경우 국제표준의 증진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적용대상 제품의 무역을 더욱 촉진하기 위하여 협력할 것을 합의한다.

6. 양 당사자는 이 부속서에 언급된 절차에 따라 획득된 모든 비밀 영업정보를 보호한다.